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- 104호

2015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 계획 공고

중소기업의 효율적 회생과 재기를 위한 「2015년도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사업」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> 2015년 3월 17일 중소기업청장

가. 사업 목적

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법적 회생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

나. 사업 예산 : 총 15억원

다. 지원 대상

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진로제시컨설팅사업*에 참여한 기업으로 컨설팅 결과 '회생컨설팅 지원가능'으로 판정된 기업

* 진로제시컨설팅 :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□진단하여 사업정리 또는 회생 등 향후 진로를 제시해 주는 사업

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<u>업무제휴 법원</u>*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, 회생컨설팅 사전평가*를 통해 '회생컨설팅 지원가능'으로 판정된 기업

- * 업무제휴 지방법원: 제휴법원은 재기지원시스템(www.rechallenge.or.kr) 공지
- *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: 위의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기업회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회생컨설팅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
- ※ 지원제외: '참고1'의 지원제외 대상 또는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기업

라. 지원 내용

범위 :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□자문 등

비용 :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

* 컨설팅 범위 등에 따라 한도액 및 지원 비율 차등적용

기간 : 협약일로부터 1년

마. 기업회생컨설팅 진행절차

| 신청·접수 (회생컨설팅 시전평가) | | 컨설팅 슝인 | | 수행기관선정 및 협약서류 제출 | | 협약체결 | | 기업부담금 납부 | | 컨설팅 실시 |
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온라인 신청서 제출 *사업관리시스템 활용 (www.rechallenge.or.kr) | \Rightarrow | 지원자격 검토 | \Rightarrow | 수행기관선정 협약서류 제출 | \Rightarrow | 지원기업 수행기관 주관기관 | \Rightarrow | 기업비용 납입 및 증빙 제출 | \Rightarrow | 중간점검, 완료점검 |
| 기업→중진공 | | 중진공 | | 기업, 수행기관 → 중진공 | | 중진공 | | 신청기업→ 수행기관 | | 중진공 |

- * 수행기관(회계법인+법무법인) 선정 :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
- * 협약체결 : 컨설팅 승인 이후 "기업", 수행기관", 충진공" 간 협약체결

바. 신청·접수 기간: '15년. 공고일 ~ 예산소진 시까지

사. 신청방법

신청 희망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(www.rechallenge.or.kr)을 활용하여 컨설팅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

아. 문의처

사업신청 등 세부사항

| 기관명 | 소관부서 | 연락처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|--|------|
| 중소기업청 | 재도전성장과 | (전화) 042-481-8964 (팩스) 042-481-6849 | 총괄기관 |
| | | (전화) 055-751-9633, 9635, (팩스) 055-751-9629 | |
| 중소기업진흥공단 | 재도약성장처 | (사업신청 홈페이지) www.rechallenge.or.kr (문의) 055-751-9636 | 주관기관 |
| 콜센터 | | 🕾 1357 (국번없음) | |

- * 사업신청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(055-751-9635)로 문의
- 참고 1.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업종
 - 2. 신청서 양식

〈참고1〉

지원제외 대상 및 제외 업종

□ 지원 제외 대상

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, 휴 폐업한 중소기업 법원 회생개시결정 및 인가 완료기업, 청산 파산 신청 및 선고가 진행중인 기업 기존 개시결정 취소 기각 철회 및 회생계획 인가전 폐지 기업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을 1회이상 지원받은 기업 임 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 신청 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(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)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 해당되는 기업 (담보채무 10억원 미만 및 무담보채무 5억원 미만 동시해당하는 개인기업은 불가) 회생절차 신청 후 회생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기업 중에서, 조사위원이 별도 선임되는 경우 (법원과의 협력사업에서 제외되어, 지원대상 배제)

□ 지원 제외 업종

| 지원 대상 업종 (한국표준산업분류) | 지원 제외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① 제조업(C)□광업(B)□운수업(H) | -제조업(C)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(33402中),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(33409中) -운수업(H)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(52914), 주차장 운영업(52915) |
| ② 도매업(G) (소매업 제외) | -주류, 담배 중개업(46102中), 귀금속 중개업(46109), 주류, 담배 도매업(46331, 3),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(46463), 귀금속 도매업(46492) |
| ③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(J) |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5821中) |
| ④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N) | 경비, 경호 및 탐정업(보안시스템 서비스업(75320) 제외)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(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 업(75992), 포장 및 충전업(75994) 제외) |
| ⑤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M) | _ |
| ⑥ 하수처리,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(E) | _ |
| ⑦ 건설업(F) | _ |
| - | 진단신청 대상 업종 ① ~ ⑦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예시 : 농□임□어업, 금융및 보험업, 숙박 및 음식점업등) 전문직 업종 제외 예시 : 한의사, 변호사, 의사등) |

〈참고2〉

회생컨설팅 유형 및 사업비 한도액

□ 컨설팅 유형 구분

유형 ① : 진로제시컨설팅 이후 '회생컨설팅 지원' 처방기업

- *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인가 결정시까지 全주기 컨설팅 (법률자문포함)
- * 업무제휴지방법원에서 조사위원 선임 생략 시 별도 보수 지급

유형 ② : 법원 회생신청 이후 회생컨설팅 신청 및 지원처방기업

- * 서울중앙지법 등 업무제휴 법원에 회생사건 신청기업 해당(개시결정 전 기업)
- * 회생절차 개시결정이후 회생인가 결정시까지 컨설팅 (법률자문 미포함)
- * 일반회생사건(회생단독사건) 적용 대상일 경우 유형 ②적용 불가

업무제휴 지방법원의 회생컨설팅은 법원의 컨설턴트(회계법인) 평가결과에 따라서 회계법인보수를 조정함

* 상, 중, 하 등급에 따라 100%, 90%, 80% 지급

□ 컨설팅 유형별 컨설턴트(전문가) 보수

①유형 회생컨설팅 컨설턴트(전문가) 보수

- 조사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

| 조사위원 보수표 | 컨 | 설팅비용 구 | 성 | 전문가 보수배분액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자산구간 | 조시위원 보수 | 컨설팅비용 (A -IB) | 정부지원금 (A) | 기업부담금 (B) | 회계법인 (D) | 법무대리인 (E) | 계 (D -IE) |
| 50억원미만 | 15 | 25.5 | 22.9 | 2.6 | 16.5 | 9 | 25.5 |
| 50억원이상~80억원미만 | 18 | 30.6 | 27.6 | 3 | 20 | 10.6 | 30.6 |
| 80억원이상~120억원미만 | 27 | 40.5 | 30 | 10.5 | 26.5 | 14 | 40.5 |
| 120억원이상~200억원미만 | 32 | 48 | 30 | 18 | 31.2 | 16.8 | 48 |
| 200억원이상~300억원미만 | 39 | 58.5 | 30 | 28.5 | 38 | 20.5 | 58.5 |
| 300억원이상~500억원미만 | 45 | 67.5 | 30 | 37.5 | 43.9 | 23.6 | 67.5 |
| 500억원이상~1000억원미만 | 50 | 75 | 30 | 45 | 48.75 | 26.25 | 75 |

(단위 : 백만원)

- *회생단독사건(회단사건)의 경우 총 보수의 10%를 할인함. (유형①) 진로제시컨설팅 이후 회생컨설팅 지원기업
 - 조사위원이 선임이 생략되는 경우 컨설팅비용

(단위: 백만원)

| 조사위원 보수표 | 컨 | 설팅비용 구 | 성 | 보수배분액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자산구간 | 조사위원 보수 | 컨설팅비용 (A+B) | 정부지원금 (A) | 기업부담금 (B) | 회계법인 (D) | 법무대리인 (E) | 계 (D+E) |
| ~50억원미만 | 15 | 37.5 | 28 | 9.5 | 28.5 | 9 | 37.5 |
| 50억원이상 ~80억원미만 | 18 | 41.4 | 30 | 11.4 | 30.8 | 10.6 | 41.4 |
| 80억원이상 ~ 120억원미만 | 27 | 48.54 | 30 | 18.54 | 34.54 | 14 | 48.54 |
| 120억원이상 ~ 200억원미만 | 32 | 57.54 | 30 | 27.54 | 40.74 | 16.8 | 57.54 |
| 200억원이상 ~300억원미만 | 39 | 70.2 | 30 | 40.2 | 49.7 | 20.5 | 70.2 |
| 300억원이상 ~500억원미만 | 45 | 81 | 30 | 51 | 57.4 | 23.6 | 81 |
| 500억원이상 ~ 1000억원미만 | 50 | 90 | 30 | 60 | 63.75 | 26.25 | 90 |

- * 회생단독사건(회단사건)의 경우 총 보수의 10%를 할인함
- * 조사위원 선임 생략시 회계법인보수는 법원의 평가결과[상(100%), 중(90%), 하(80%)]반영.

(유형②) 업무제휴 지방법원 회생신청 후 회생컨설팅 지원기업 (단위:백만원)

| 조사위원 보수표 | 컨 | 설팅비용 구 | 보수배분액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자산구간 | 조사위원 보수 | 컨설팅비용 (A+B) | 정부지원금 (A) | 기업부담금 (B) | 회계법인 (D) | 법무대리인 (E) | 계 (D+E) |
| ~50억원미만 | 15 | 27.7 | 24.9 | 2.8 | 27.7 | _ | 27.7 |
| 50억원이상 ~80억원미만 | 18 | 29.8 | 26.8 | 3 | 29.8 | _ | 29.8 |
| 80억원이상 ~ 120억원미만 | 27 | 33.19 | 29.8 | 3.39 | 33.19 | _ | 33.19 |
| 120억원이상 ~ 200억원미만 | 32 | 39.19 | 30 | 9.19 | 39.19 | _ | 39.19 |
| 200억원이상 ~300억원미만 | 39 | 47.8 | 30 | 17.8 | 47.8 | _ | 47.8 |
| 300억원이상 ~ 500억원미만 | 45 | 55.2 | 30 | 25.2 | 55.2 | _ | 55.2 |
| 500억원이상 ~ 1000억원미만 | 50 | 61.31 | 30 | 31.31 | 61.31 | _ | 61.31 |

- * 회생단독사건(회단사건)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님
- * 조사위원 선임생략시 회계법인보수는 법원의 평가결과[상(100%), 중(90%), 하(80%)] 반영

□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의 참여범위

수행기관 선정

진로제시컨설팅 이후 신청기업 : 회계법인 + 법무법인 공동수행 (컨설팅 범위 내 법률자문 포함)

업무 제휴법원 회생신청 후 회생컨설팅 신청기업 : 회계법인 단독수행 * 법률자문은 기 계약된 법무대리인이 수행 (법률자문비용은 기업부담)

- 회계법인 : 각 지방법원 조사위원 후보로 등록된 법인 중 중진공에서 별도 구성□운영
- 법무대리인(또는 변호사) : 회생사건 업무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구성 운영

□ 업체부담금 납부 및 협약시점

| 유형 | 기업부담금 납부시점 | 협약시점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업회생컨설팅 유형① | 회생신청이전 일시납 | 회생사건 신청이전 협약 |
| 기업회생컨설팅 유형② | 회생컨설팅 협약, 법원허가 후 일시납 | 회생지원결정이후 협약 (개시결정일~30일 이내) |

- * 기업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컨설팅 수행 불가 (협약파기)
- * 컨설팅 진행 중 사건의 기각□폐지 등 협약해지 사유발생시 발생시점 기준으로 정산□반환
- * 유형 변경으로 기업부담금환급 사례 발생시 : 법원과 수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환급□정산

□ 지원(컨설팅) 범위

유형 ①: 진로제시컨설팅 이후 회생컨설팅 지원기업

| 추진단계 | 법무대리인 | 회계법인 |
|--|--|--|
| 개시신청단계 (개시신청~개시) | 개시신청서 취합, 작성 및 제출 개시결정 관련 법률사무대리 (대표자심문, 현장검증, 보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 등) | 개시신청서 작성지원 (회계자료,재무자료작성) 대표자 심문답변서 작성지원 (회계분야) |
| 조사단계 (개시결정~1차집회) | 법률자문 채권시부인표취합/제출 채권, 재산목록취합 제출 각종 신청서 작성 지도 1차집회자료 지원, 검토 참석 | 조사대응(조사위원선임시) 채권, 재산목록 및 시부인표 작성검토 관리인보고서 작성지원 1차관계인집회 참석 기타회계 및 세무자문 |
| 회생계획안작성 (1차집회~ 회생계획안제출) | 법률자문 회생계획안검토 및 취합제출 회생계획안 법원검토 대응 | 회생계획안 작성지원 검토 회생계획안 법원검토 대응 기타회계 및 세무자문 |
| 회생계획안 인가지원 (회생계획안제출~ 2/3차관계인집회) | 법률자문 관계인집회 자료작성 지원 관계입집회참석 채권자협상지원(방법지도) | 관계인집회참석 기타회계 및 세무자문 채권자협상지원(금융권 등) |

유형 ② : 법원 회생신청 이후 회생컨설팅 지원기업

| 구분 | 회계법인 업무범위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채권, 재산목록 및 시부인표 작성지원 |
| 조사단계 | 관리인보고서 작성지원 |
| (개시결정 ~ 1차집회) | 1차 관계인집회 참석 |
| | 기타 회계 및 세무 자문 |
| 회생계획안작성 | 회생계획안 재무분야 작성지원 |
| | 회생계획안 법원검토업무 대응 |
| (1차집회~회생계획안제출) | 기타 회계 및 세무 자문 |
| 회생계획안 인가지원 | 관계인집회 참석 |
| (회생계획안제출~ | 기타 회계 및 세무 자문 |
| 2,3차관계인집회) | 채권자 협상지원 (금융기관협상) |

^{*} 개시결정이후 발생되는 회생절차 관련한 법률 자문은 기업 자부담 수행

[별지 제1호 서식] 참고용서식이며 실제 재기지원시스템(www.rechallenge.or.kr) 신청

| <u>접수번호</u> | <u>:</u> 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|
| | 중소기업 회생킨 | 선설팅 신청 | 서 | | | | |
| 기 업 명 | | 대 표 자 | | | | | |
| 법인등록번호 | | 생년월일 | | 년 | 월 | 일 | |
| 사업자등록번호 | | 설립일자 | | 년 | 월 | 일 | |
| 소재지 (□본사□공장) | | 전화번호 FAX번호 | () | - - | | | |
| 주생산품목 | | 홈페이지 | | | | | |
| 대표자 | 성명: 직위: E-mail: | 전 화: (휴대폰: (|) | <u>-</u> | | | |
| 총괄책임자 | 성명: 직위: E-mail: | 전 화: (휴대폰: (|) | _ _ | | | |
| 회생절차 개시신청정보 | ■ 신청법원 () ■ 사건번호 () | 변호인 소속, 성명 | 소속 : 성명 : 연락처 | () 법 () | 무법인 | | |
| 변호인 선임여부 | □ 선임 □ 미선임 | | | | | | |
| 기재내용이 . 신청합니다. |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D | 여, 중소기업 회생 | !컨설팅. | 사업을 | | | |
| | | 20 | 년 | 월 | 일 | | |
| | 신청인(대 | 丑) | (<i>k</i> | 명 또는 | 인) | | |
| ※ 첨부서류 | | | | | | | |
| | 시컨설팅을 받은 기업 업 진로제시 처방전(결과통보용) | 1부. | | | | | |
|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신청 이후, 회생컨설팅 희망 기업 법원에 제출한 회생신청서 관련서류 사본 1부. 법무 대리인 선임 계약서 사본 1부.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.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.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. | | | | | | | |
| | 중소기업청장, 중 | 중소기업진흥 | 공단0 | 기사장 | 귀ō | i ŀ | |